##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77

발의연월일: 2022. 4. 8.

발 의 자: 김석기 • 구자근 • 김미애

金炳旭・김정재・박성중

박 진 • 정진석 • 조명희

조은희 · 지성호 · 추경호

태영호 · 홍석준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개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 관인 및 개표참관인을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치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이나 활동보조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투표참관인 등의 모집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022년 최저임금은시간당 9,160원으로 8시간 근무할 경우 7만 3,280원의 일급이 지급되어야 하나,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5만원,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3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재외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 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관마다 1개 내지 3개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 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소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 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6호등).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 및 제7호 중 "식비"를 각각 "식비. 이 경우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이상으로한다."로 한다.

제135조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218조의17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8조의20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	
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6
의한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	
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手當과 <u>식비</u>	<u>식비. 이 경우 수당</u>
	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
	<u>상으로 한다.</u>
7.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7
의한 開票參觀人의 手當과	
<u>식비</u>	<u>식비. 이 경우 수당은 「최저</u>
	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
	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한
	<u>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생 략)
  - 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 류와 금액은 中央選舉管理委員 會가 정한다.
  - ③ (생략)
-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운영) ① ~ ③ (생 략)
  -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 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 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어 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⑨ (생 략)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 참관) ① ~ ⑥ (생 략) <신 설>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하되, 수당은 「최저임금</u>
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M210エー11(M14   エエー = 5/1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참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